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영희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고,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0,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현실화 하며,
-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,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
-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 및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”로 개정함

- 나. “노인”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3호).
- 다.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정함(안 제3조).
- 라.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월별 고지액을 시에서 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마. 보험료 지원의 중단, 예산확보,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4월 2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 명 :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☐ 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 |
|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|

#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영희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8-282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14일

발 의 의 원 : 김영희 의원

찬 성 의 원 : 장인수, 성길용, 이성혁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고,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0,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현실화 하며,
-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,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
-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 및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”로 개정함
- 나. “노인”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3호).
- 다.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정함(안 제3조).
- 라.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월별 고지액을 시에서 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마. 보험료 지원의 중단, 예산확보,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.

## □ 참고사항

- 참고자료 : 차상위계층 현황 등 - 별첨1
- 관계법령발췌서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 등 - 별첨2
- 현행 조례 - 별첨3

##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건강보험”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.
2. “장기요양보험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.
3. “노인”이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건강보험료 등”이라 한다)를 지원하는 대상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제3항에 의한 오산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로 한다. 단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제외한다.

**제4조(보험료 지원)**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에 따

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.

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,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③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.

**제5조(사실조사)**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 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중단)**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
2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

**제7조(지원예산 확보)** 시장은 매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오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수조치)**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첨1】

### 참 고 자 료

#### □ 오산시 차상위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| 구분           | 2019년도    | 2020년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총지원액      | 1월                  | 2월                  | 3월                  | 총지원액(추정)               |
| 지원액<br>(세대수) | 43,352천 원 | 4,156천 원<br>(450세대) | 4,069천 원<br>(450세대) | 3,698천 원<br>(438세대) | 47,697천 원<br>(월 평균×12) |

☞ 자료제공 : 오산시 노인장애인과

#### ○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

-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노인가구 지원 [부담비율은 7:3(오산시:경기도)]

※ 향후 경기도-시군 협의를 거쳐 기준금액을 최저보험료로 상향 조정 가능

▷ 근거 : 「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

- 제2조(지원대상) :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

#### □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등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 현황

##### ○ 2020년도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 현황

| 구분   | 1월         | 2월         | 3월         | 월평균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부과금액 | 5,017,690원 | 4,937,940원 | 4,928,960원 | 4,961,530원 |
| 세대수  | 514세대      | 504세대      | 497세대      | 505세대      |

☞ 자료제공 :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

#### ○ 국민건강보험(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) 최저보험료 : 15,410원

- 보건복지부 고시(2019.12.31.) 최저건강보험료 : 13,980원

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13,980원 × 1만분의 1,025 = 1,430원

#### □ 조례 개정 후 소요예산(추정)

##### ○ 2020년도 연간 소요예산(추정) : 59,538천 원

- 1~3월 평균 부과금액 × 12월

##### ○ 2020년도 예산현액 : 48,000천 원(도비 14,400천 원, 시비 33,600천 원)

##### ○ 2020년도 추가필요예산(추정) : 11,538천 원

## 【별첨2】

# 관계법령 발췌

##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제6조(가입자의 종류)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.

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1.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
2. 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),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
3.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
4.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,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

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.

제69조(보험료) ① ~ ④ (생략)

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,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.

##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
제32조(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)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"라 한다)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나.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2.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나.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##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

제15조(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)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, 소득 및 재산의 범위,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(생략)

##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8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)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료"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

제9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)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

제4조(장기요양보험료율)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,025로 한다.

##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)」

제3조(월별 보험료액의 하한)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: 18,600원
2.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: 13,980원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「의료급여법」

제3조(수급권자)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2.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4.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6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)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7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  8.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  9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  10.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~ ④ (생략)

##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

**제2조(수급권자)**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##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9. (생략)
10. "차상위계층"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11. (생략)

##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**제3조(차상위계층)** 법 제2조제10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### **【별첨3】**

## **현행 조례**

### **오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**

제정 2007년 1월 12일 조례 제91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차상위계층”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(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)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시 지역가입자이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0,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다.

**제4조(지원시기)**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하되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급한다.

**제5조(대상자 선정)**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신청 받아 이를 검토·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사실조사)**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통보한 대상자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예산 확보)**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